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 분석* :

경남, 전북지역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

이 상 록 · 진 재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2년 5월 전북 및 경남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인식의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자립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의 긍정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양상도 자활사업의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배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기관내 관계망 및 조직풍토 등은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인센티브 조치 및 프로그램 유형(시장형)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요청됨을, 곧 자활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 이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1-002-C00342 C3207).

** 이상록 : 군산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진재문 :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전공, 전임강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활기관의 운영 등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시사하여 준다.

주제어 : 탈빈곤정책, 자활사업의 효과, 자활후견기관, 자립태도, 자립요소

1. 문제제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자활사업이 도입된지도 2년여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그간 자활사업은 국민의 정부가 표방하는 “생산적 복지”를 대표하는 복지정책이자 탈빈곤 정책의 본격적 도입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자활사업의 도입이 지닌 다음과 같은 의의에 비추어, 자활사업은 주요한 빈곤정책상의 변화로 주목되어 왔다.

첫째,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능력 보유 빈민(working poor)’들이 자활사업의 도입에 의거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은 빈곤정책 혁신의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곧,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결여된 빈민들에게 한정되었던 구빈법 형태의 생활보호제도를 근대적 공공부조제도의 모습으로 일신함에 주요한 토대가 된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로, 자활사업의 도입으로 인해, 단순히 빈곤층에 생계지원만을 제공하던 기존 공공부조제도의 제한적인 기능과 역할이 자활자립에의 지원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적극 변화된 점, 곧 탈빈곤 정책의 본격적 도입이라는 점에서 자활사업은 빈곤정책상 새로운 변화로 주목할만한 의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의 제도 내용과 성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어 이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념적 대립에 이르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곧, 자활사업의 효과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자활사업이 “근로능력이 미흡한 빈곤층의 실업과 빈곤 해소에 적합한 해법이 될 것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회연대적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적극 기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긍정적 기대와는 상반되게 일부에서는 자활사업이 “놀고먹는 복지”를 조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곧, 높은 생계비 지원 등을 배경으로 자활사업은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work disincentive),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성(dependency)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사회적 논란이 고조되면서 최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자활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작업이 시도되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행정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차원에 머무를 뿐이어서 자활사업의 실제 효과는 분석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혹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연구들도 수행되었지만(강남식 외, 2002; 윤명숙, 2001), 연구내용들이 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한정되어,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형편이다. 반면, 객관적 평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활사업 개선에 관한 논의들만 양산되어 흥미로운데, 이들 연구 대부분은 주로 제도 내용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차원의 규범적 논의 혹은 단편적인 행정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그칠 뿐인 것으로 평가된다(이인재, 이성수, 2002; 노대명, 2002; 류정순, 2002; 진재문, 2001).

이러한 연구동향에 비추어 보면, 자활사업의 실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및 이에 입각한 자활사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는 현 시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자활사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효과’를 자활사업 참여자への 영향, 곧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형성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보다 실제적일 수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및 자활사업 제도 개선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물론, 자활사업의 효과 혹은 성과 분석은 자활사업이 상정한 최종 목표를 기준으로, 곧 ‘자활자립(self-sufficiency)의 실현’ 혹은 ‘빈곤탈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평가틀을 적용하여 자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자활사업의 도입기간이 2년여에 불과하여 최종목표를 기준으로 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 종료자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이와 같은 평가틀을 적용하는 데에 큰 애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정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곧 자활사업의 최종 목표인 자립실현 혹은 탈빈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요소, 즉 ‘자립태도 및 인식, 자립 관련 요소의 형성’이라는 매개적 요소를 기준으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효과에 참여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그리고 자활기관 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활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 선행 연구의 검토

1) Workfare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의 동향

자활사업 평가에 유용한 선행연구로는 미국의 TANF 프로그램에 관한 관련 연구들이 주목될 필요가 있다. 물론, 1996년도 PROWRA법의 제정으로 시행된 TANF 프로그램은 자활사업과는 제도 도입의 배경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제도 내용도 일부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일례로, “자활사업에서 수급자의 탈빈곤과 자립의 통로가 주로 자활공동체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로 설정되는데 반해, TANF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을 주요 통로로 설정하여” 제도의 초점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자활사업과는 상이하게 TANF 프로그램은 수급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time limit)” 역시 내용상 주요한 차이로 지적된다. 이와 더불어 “TANF 프로그램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어 실행되고 있는 점” 또한 제도 운영상 특징적 차이로 지적된다.

그렇지만, 자활사업과 TANF 프로그램 모두 “근로활동 혹은 관련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이러한 활동을 탈빈곤 및 자립실현에의 기제로 설정하여” 이들 모두는 ‘Workfare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 성격상 공통점에 비추어 보면 TANF 프로그램에 관한 그간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효과 분석에도 일련의 유용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

그간 TANF 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에서는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요소들이 복지수급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곧, 기존 연구들에서는 TANF 프로그램이 공공부조제도 개혁(welfare reform)의 목표인 “의존성(dependency)의 해소”, “자립활동의 증대”, “탈빈곤과 경제적 자립의 제고”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가 효과 분석의 중심 내용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연구들에서는 복지수급자 및 탈수급자(welfare receipt)의 수, 복지수급자 및 탈수급자의 고용(employment), 탈수급자의 소득(income) 등이 효과 분석의 주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TANF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반된 평가들이 제기되어 주목되고 있다. 요컨대, 일부에서는 복지수급자 수의 현저한 감소와 복지수급자 및 탈수급자의 높은 고용률을 근거로 TANF 프로그램의 성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례로, 1999년 7월의 복지수급자 수는 1994년 3월에 비해 무려 49%나 감소되고, 200여만 명 이상의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부에서는 TANF 프로그램의 효과를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Besharov & Germanis, 2000; Brauner & Loprest, 1999). 1998년도 정부 통계자료에서도 TANF 수급자의 70%가 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또한 일부 실증 분석(Issacs & Lyon, 2000)에서도 탈수급자의 최소 1/2에서 최대 2/3가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 TANF 프로그램의 긍정적 성과를 확인하여 주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와는 상반된 평가를 제기하는데, 특히 탈수급자의 고용 양상, 소득 및 빈곤상 지위 등을 지표로 한 연구들에서는 TANF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 TANF 프로그램에의 성과 분석은 TANF 프로그램이 실행된 1996년 이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996년 이전부터 AFDC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에서는 연방정부의 유예조치(Waiver) 아래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 실험 분석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의 공공부조제도의 개혁(welfare reform)과 TANF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성과들이 1990년대부터 상당수준 축적되어 온 실정이다.

TANF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Klawitter & Weeks(2000)은 ① 프로그램 도입 전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저소득 및 빈곤층에 정책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② 복지수급 가구와 탈수급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비교분석한 연구, ③ 복지수급자 혹은 탈수급자의 고용 및 경제적 상태에 관련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④ 실험설계에 의거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의 영향에 대한 분석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석방법들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TANF 프로그램에의 성과가 모니터링 되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는 바이다.

(Cancian, 2001). 일례로, Meyer & Cancian(1996; 1998)는 “탈수급 여성의 절반 이상이 탈수급 1년 이후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여, 탈수급 및 고용 증대 추세가 실제적으로 빈곤탈출 및 경제적 자립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음을 제기하여 주목된다. 또한, Pavetti & Acs(1996)도 20대 복지수급 여성들조차 13% 정도만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적당한 직업(시간당 8\$ 이상의 임금을 받고, 주당 최소 35시간 노동하는 직업)에 지속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분석하여, TANF 프로그램은 ‘빈곤 감소와 경제적 자립의 체고’라는 기준에 의거하면 그다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Burtless, Pavetti, Acs(1997)도 탈수급자 중 안정적으로 풀타임 직업에 고용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하여, 또한 Cancian & Meyer(2000)도 탈수급 이후 5년의 경과에도 이들 중 1/4만이 풀타임으로 고용된 것으로 분석하여, 그 성과가 그다지 크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편,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TANF 프로그램의 성과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Kaestner, 1999). 예를 들면, Zedlewski 등(1996)은 탈수급 여성의 66%가 시간당 임금이 6.00\$인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TANF 프로그램이 빈곤가구 수를 오히려 13% 증대시킬 것으로 주장하기까지 한다. 또한, Waldfoegel 등(1997)도 탈수급자의 40% 정도가 시간당 6.38\$의 임금으로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될 것임을 가정하면서, 이로 인해 전체 빈곤가구의 비율은 6%, 극빈층 비율은 54% 증대될 것이라 극히 부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의 TANF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 연구들의 동향에서 자활사업의 성과 분석과 관련하여 각별하게 주목할만한 부분은 평가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성과가 달리 평가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평가지표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자활사업은 어떤 지표를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자활사업과 TANF 프로그램은 구체적 내용과 운영은 상당한 차이를 지니기에 TANF 프로그램에서의 평가틀과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TANF 프로그램에서는 ‘고용 및 근로소득’이 수급자의 자립노력과 자립수준을 대리할 수 있지만, 자활사업에서는 자활자립 통로가 주로 자활공동체 형성으로 한정되기에, 이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자활사업에서는 자활 프로그램에의 온전한 참여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TANF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수급자들에게 별도의 고용 및 근로소득이 허용되지 않을 때, 따라서 자활사업 성과를 고용 및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탈수급자를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고용 및 근로소득 등을 지표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도입 기간이 2년여에 불과하여 프로그램 종료자들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에 TANF 프로그램 평가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자활사업의 성과, 특히 수급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과정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최종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과정지표를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립태도 및 인식의 형성’ 및 ‘자립요소의 체고’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과정 지표, 곧 수급자의 행태적 측면이 Workfare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준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Parker(1994)의 연구는 “수급자의 자기효능감 제고가 복지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것으로”, 또한 Nichols-Casebolt(1986) 연구도 “수급 여성에 비해 비수급 여성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제시하여, 행태 변화가 자립 성취에의 주요한 지표가 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많은 기존 실증연구들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복지수급간 부적(-) 관계”가 검증하여(Goodban, 1985; Jarrett, 1996; McLoyd & Wilson, 1991), 수급자의 행태와 자활자립간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수급자의 심리 및 태도 등이 자립에의 주요한 매개요인임은 ‘태도변수와 고용간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Menaghan(1990)의 분석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저임금) 고용간 밀접한 관련성”을 실증하고 있으며, Pavetti 등(1997)은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수급자들의 고용에 수급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제고가 핵심”이라 주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한편, Taylor(2001)의 연구에서도 “수급자들이 지닌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효능감은 고용상 지위 및 수급기간 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하여, 태도적 측면이 수급자의 고용 및 자립에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수급자의 태도가 평가지표로 유용할 수 있음은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이들 연구에서는 기업주를 대상으로 복지수급자의 채용시 고려되는 주요 기준을 설문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서는 “긍정적인 태도” “신뢰성” “노동윤리” “약속을 잘 지키는 태도” 등이 채용에의 주요 기준으로 지적된 반면, “직업경력” 및 “직업훈련 이수”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태도 및 인식이 고용 및 자립에의 주요한 매개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Meyer, 1999).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자립 관련 인식 및 태도의 형성을 지표로 Workfare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최종목표와 과정지표간 부조응의 가능성, 예를 들면 자립태도 등의 보유가 자립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면, 과정지표에 의거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온전한 성과분석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도 상정된다. 이는 본 연구가 지닌 한계이며, 본 연구에서의 과정지표와 최종목표의 관련성은 후속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과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 연구에서의 관련 요인들의 영향

한편,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과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틀 설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에서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1) 개인 특성 및 가족 특성의 영향

“수급자의 탈수급과 고용, 경제적 자립에 어떠한 개인 및 가족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떤

요인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등은 TANF 도입 이후 중심 주제가 되어 왔는데, 관련 연구들에서 주요 요인들의 하나로 인적자본 변수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어떤 요인들보다 인적자본의 보유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Brooks & Buckner, 1996), 관련 연구들에서는 인적자본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Cancian 등(2000)은 위스콘신 주의 TANF프로그램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및 소득 등에 관한 분석에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이전 고용경력이 미흡한 수급자일수록 상시직에 고용될 확률은 낮고, 소득수준도 낮은 경향이 있음”을 제시하여, 인적자본 수준이 수급자의 고용 및 자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Danziger 등(2000a)도 “고졸미만의 학력, 노동시장 경력의 미흡, 직업기술의 미흡 등 역시 수급자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여, 인적자본 보유가 자립과정에 주된 관건이 됨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연구들에서는 학력 및 기술수준, 노동시장 경력 뿐 아니라 건강수준, 장애보유 등도 수급자의 고용 및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여(Danziger, et. al., 2000b; Rebecca, 2000; Wolfe & Hill, 1995; Bird & Fremont, 1991), 고용 및 경제적 자립의 성패를 결정함에 있어 인적자본 변수의 주요한 관련성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들에서는 인적자본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심리적 측면의 영향을 제기하여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Danziger, et. al. 2000b; Zuckerman & Kalil, 2000; Kalil, et. al., 2001; Kunz & Kalil, 1999). 곧, 이들 연구에서는 동일한 학력과 가족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간 고용 및 경제적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에 주목하여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적극 제기하며, 실제 분석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광범위하게 실증되고 있다. 일례로 Kalil 등(2001)의 연구결과에서는 수급자의 심리 및 태도 등이, 곧 ‘우울증 여부’ 및 ‘근로활동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가 인적자본 변수들과 더불어 수급자의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Danziger 등(2000b)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고용 장애요인 중 정신건강상 장애가 수급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정신건강상 장애는 여타 장애요인과 결합하여 고용 및 고용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관련 연구들에서는 개인특성 뿐 아니라 가족특성의 영향도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Zedlewski(1999)의 분석에서는 인적자본 변수와 더불어 가족구성의 측면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곧 “영아보유 및 장애아동 보유 등이 고용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제시하여 주목된다. 또한, Klawitter & Weeks(2000)의 연구에서도 “3세 이하 아동보유 및 아동 수는 수급자의 고용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Rebecca(2000)의 분석에서도 아동 수는 고용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또한, “복지수급 여성의 42%가 아동양육 문제로 풀타임 형태로 고용되지 못하고 있고, 32%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밝힌 Siegel & Loman(1991)의 연구결과 역시 가족구성 양상이 수급자의 고용 및 경제적 자립에 주요한 관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급자의 탈수급 및 고용에는 정부지원 수급경력 및 취업경력 또한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TANF 수급기간이 길수록 고용율이 낮다”라는 Klawitter & Weeks(2000)의 분석결과, “이전 복지수급기간이 길고 수급경험이 많을수록 상시직 고용률이 낮고 저소득 경향이 높

다“라는 Cancian 등(2000)의 연구결과, 그리고 ”이전 취업경력이 미흡할수록 고용가능성이 낮다“라는 Lerch & Mayfield(2000)의 연구결과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인구학적 특성(Rebecca, 2000), 교통수단 및 거주지역의 특성(Ong, 1996) 등도 수급자의 고용 및 탈수급, 경제적 자립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다양한 개인 및 가족 특성 등이 Workfare 프로그램의 성과에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2) 프로그램 요소 및 유형의 영향

한편, TANF 프로그램 관한 연구들에서는 프로그램 요소 혹은 프로그램 유형의 영향도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다. TANF 프로그램의 본격적 도입 이전에 각 주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구성 핵심 요소들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는데, 프로젝트 결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의 영향이 제시되어 흥미롭다. 물론, 여기에서는 실험 내용과 조건 등이 상이하기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긴 어렵지만, 프로젝트 결과에서 나타난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들의 영향은 자활사업의 분석과 정책 대안 모색에 있어 적극 참조할만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곧, 이들 프로젝트에서의 핵심 쟁점이 ‘급여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근로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떤 유형의 근로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근로활동에의 자발적 참여가 효과적인지 아니면 의무적 강제가 효과적인지’, ‘자립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어떤 영향이 있으며, 어떤 유형의 인센티브 지원이 더 효과적인지’ 등이었음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 연구결과는 주목할만한 함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에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ong, 2001; Bloom & Michalopoulos, 2001).

첫째, 수급자에 대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는데, 각 주의 실험결과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수급자의 고용 및 소득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두 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병행할 경우가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활용한 경우 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구직활동지원과 교육훈련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근로활동(Work)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한 수급자가 비참여 수급자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주목되고 있다.

셋째, 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비용을 부수하나, 고용 및 탈수급에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고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는 고용 뿐 아니라 소득의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감면(disregard)은 일부분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그 효과는 단기간에 한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의 소득공제조치는 근로소득과 가구소득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수급자의 고용 이후 고용안정과 상향적 직업이동을 목표로 한 고용 이후의 고용지원 서비스(post-employment service)의 제공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 이후 교육지

원 서비스(post-secondary education) 지원은 아직까지 충분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자립 제고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Rebecca(2000)의 분석에서는 Workfare 프로그램의 실행기간 및 근로활동 불이행에 대한 처벌수준 등도 수급자의 고용에 매우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이들 요소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분석과 관련하여 주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Klawitter & Weeks(2000)의 연구도 근로활동 프로그램 유형들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결과에서는 구직활동지원사업과 직업훈련은 수급자의 고용에 긍정적인 반면 직장연수, 공익봉사활동, 공공근로사업 등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Workfare 프로그램의 성과에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함축하여 준다. 곧, 수급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에 따라,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이의 실행 양상에 따라 Workfare 프로그램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현 자활사업의 경우에는 자활자립의 성과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곧, 수급자의 다양한 개인 및 가족 특성은 자활자립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활기관에서의 관련 지원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후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에의 실증분석을 통해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규명하고,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 데이터 및 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활사업의 효과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활사업의 효과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곧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자활기관 지원 등이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상 연구문제들의 분석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조사 데이터가 활용되는데, 데이터는 전북 및 경남지역 중소도시에 위치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조사시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활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다. 설문조사는 2002년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주 동안 조사원을 활용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이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기에, 또한 조사대상자 또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활지원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에,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제한성을 염두하여 두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 곧 구직활동사업, 직업훈련사

업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본 연구의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은 제한적인 의미만을 지닌다. 또한, 대도시에서의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지방 중소도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효과 및 관련 요인의 영향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론의 도출을 위해서는 자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편, 설문조사에서의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자활사업에의 참여양상,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 자활자립 태도 인식의 형성 및 자립 요소의 제고, 자립전망 등이 설정되었는데, 설문문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자활사업 실태 설문지 구성 주요 조사 항목

설문 항목	조사 문항
개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종교, 음주행태(음주일수) ● 인적자본 : 학력, 건강상태, 기술자격증 보유, 총 근로활동년수 ● 취업경력 : 자활사업 참여 직전의 취업상태 (취업(실직)기간, 취업분야(산업), 취업형태, 담당직무) ● 공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 생활보호지원, 취업사업,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창업지원사업, 실업급여지원
가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구성 : 가구원 수, 요보호 가구원의 보유(미취학자녀, 취학자녀 60세이상 노인, 장애인, 요간병 질환자), 취업 가구원의 보유 ● 경제적 상태 : 가구 총수입(월), 부채액수, 소득원별 수입액, 자활사업 참여 이전 가구 총수입(월), 주거유형
자활사업에의 참여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시점 및 참여기간(월), ● 참여 프로그램 유형(자활근로/자활공동체; 봉사형/공익형/시장형) ● 담당 직무 및 담당 직무에의 만족도(5점척도)
자활기관에서의 관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적 지원: 부가수당, 차량지원, 포상지원, 처벌조치 등. 물질적 지원에의 만족도(5점척도) ● 상담지원: 상담경험 및 상담횟수, 상담에의 만족도(5점척도). ● 교육지원: 소양교육, 자활사업교육, 직업교육의 경험 및 만족도(5점척도)
기관내 관계 및 기관 풍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직원과의 관계: 업무적 관계/정서적 관계(5점척도) ● 동료와의 관계(5점척도) ● 자활기관의 전반적 풍토(5점척도)
경제적 자립에의 전망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자립 전망(5점척도) ● 예상되는 자립 소요 년수 ● 자립계획 수립 : 계획수립도(5점척도), 자립형태(취업/자영/기타)
자립태도 및 인식, 자립요소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형성(5문항, 5점척도) ●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형성(5문항, 5점척도) ● 생활태도의 변화(4문항, 5점척도) ● 가족관계의 변화(3문항, 5점척도) ● 자립요소들의 제고(4문항, 5점척도)

4. 분석결과 : 자활사업의 성과 및 관련 요인들의 영향

1) 조사대상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자활사업의 성과 및 관련 요인들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앞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2>와 <표 3>은 조사대상자 개인 특성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로,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1)

구분	변수	항 목	빈 도	백분율(%)	비 고
개인특성(1) :일반적 특성	성 별	여 성	424	67.2	
		남 성	207	32.8	
	연 령	20 - 29세	12	1.9	Min. 20.0 Max. 71.0 Mean 47.03 S.D. 8.16
		30 - 39세	91	14.4	
		40 - 49세	292	46.3	
		50 - 59세	200	31.7	
		60세 이상	36	5.7	
	종 교	없 음	183	29.0	
		있 음	448	71.0	
	1주일 평균 음주일수	0	391	62.0	Mean 0.95 S.D. 1.67
1 - 2일		152	24.1		
3 - 4일		47	7.4		
5일 이상		41	6.5		
개인 특성(2) :인적 자본	학 력	국졸 이하	243	38.5	Min. 0.0 Max. 16.0 Mean 8.39 S.D. 3.53
		중졸(퇴)	189	30.0	
		고졸(퇴)	176	27.9	
		대졸(퇴) 이상	23	3.6	
	건강상태(1) :주관적 건강수준	매우 건강치 못함	33	5.2	Min. 1.0 Max. 5.0 Mean 2.95 S.D. 0.99
		건강치 못한 편	191	30.3	
		보 통	221	35.0	
		건강한 편	148	23.5	
	건강상태(2) :질환(장애)	매우 건강함	38	6.0	
		없 음	326	51.7	
	기술자격증 보유	있 음	305	48.3	
		없 음	480	76.1	
	총 취업경력	없 음	151	23.9	Min. 0.0 Max. 50.0 Mean 10.15 S.D. 10.67
1 - 10년 이하		48	7.9		
11 - 20년 이하		368	60.7		
21 - 30년 이하		102	16.8		
31년 이상		57	9.4		
		31	5.1		

먼저, 분석결과에서 전체 조사대상자 631명의 성별 구성이 남성 207명으로 32.8%, 여성 424명으로 67.2%를 점하는 것으로, 연령별 구성에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46.3%와 31.7%, 평균연령은 47.03세로 나타나,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는 40-50대 중장년층이며 여성의 비중이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한편, 1주일 동안의 평균 음주일을 통해 알코올 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3일 이상 음주하는 경우는 11.4%에 불과한 반면 전체의 60% 이상이 음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알코올 의존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인적자본 보유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 보유 양상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국졸 이하가 38.5%, 중졸(퇴)가 30.0%, 고졸(퇴)가 27.9%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건강수준도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주관적 건강도에 대한 분석결과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은 29.5%인 반면 ‘건강치 못한 편’이라는 응답은 35.2%로 나타나, 자활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자립에 필수조건인 기본 활동능력 조차 보유하지 못한 비율이 1/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활동능력상 문제를 보유하고 있음은 장애 및 질환 보유 상태에서 재차 확인되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나 질환 보유’를 설문한 결과, 조사응답자의 51.7%가 이를 보유한 것으로 응답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당수가 건강상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기술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자격증 보유 실태를 설문분석한 결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는 23.9%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²⁾ 자활사업 참여자의 기술능력 역시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체 취업경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균 취업년수가 10여년에 불과한 것으로, 취업년수 분포에서도 10년 미만이 6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경력 또한, 특히 조사대상자들이 40-50대의 중장년층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취업실태와 고용경력을 분석한 결과(아래 <표 3>)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립에 유용한 고용경력은 극히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 이전에 취업한 것으로 응답한 대상자들(65.5%)의 고용은 주로 공공근로사업(62.2%)이나 숙박/음식업(9.9%), 그리고 건설업(7.2%) 등에서 일용직(81.4%) 및 단순노무직(80.7%)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 이전에 비취업한 35.5%의 응답자들도 자립에 유용한 고용경력을 지닌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앞서의 경우 보다 제조업 등에서 정규직 형태로 생산직 및 기능직으로서 고용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존재하였거나 혹은 숙박/음식업 및 건설업 등에서 단순노무를 담당하며 일용 혹은 임시직으로 고용된 비율이 전체의 50%를 상회하여, 이들 대부분 역시 노동시장 주변부에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주변부 노동시장에의 고용경력은 자활사업 참여 이전의 생계유지의 불안정성을 시사

2)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였다는 응답에는 운전면허증, 간병인 자격증 등의 보유에 대한 응답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조사대상자들의 기술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는 것으로, 이는 곧 이들이 이전에도 정부의 생계지원에 주로 의존하여 생계를 영위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생활양상은 이전 정부지원 프로그램에의 이용에 대한 응답에서 확인되는데, 전체 조사 대상자의 50%가 이전에도 생활보호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경험은 전체의 57%에 이르는 것으로, 또한 취로사업에 참여 경험은 전체의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주로 노동시장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정부지원에 의존하며 생활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반면, 직업훈련 프로그램 혹은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용 경험은 극히 저조하여 이들이 상향적 직업이동 통로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노동력이었으며, 저소득 및 빈곤층의 생활력을 지닌 우리사회의 한계계층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래의 <표 4>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원 구성을 분석한 결과는 7세 이하 미취학 자녀 보유 가구의 비중은 11.1%, 60세 이상 노인 보유 가구는 16.2%, 요보호 장애인 보유 가구는 11.6%, 요간병 질환자 보유 가구는 9.0%로 나타나, 가구원에 대한 보호(care)부담은 예상과는 달리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고등학생 이하 취학자녀 보유율은 55.4%로 나타나,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생계비를 분담하는 가구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86.7%가 취업 가구원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생계유지의 경제적 부담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여준다.

자활사업 참여자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월 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65.2만원으로, 가구소득 분포에서 50만원 이하는 33.8%, 51-100만원은 59.3%로 나타나, 정부의 생계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구소득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액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평균 지원액수는 56.8만원, 지원액수의 분포는 41-50만원이 32.2%, 51-60만원이 2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부지원도 매스컴에서의 보도와는 달리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구부채는 경제적 상태를 제약하는 부분일 뿐 아니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노력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조사대상자의 가구 총 부채액을 분석한 결과, 부채액수가 1,000만원 이하가 80%, 부채가 없는 경우도 34.7%에 이르러 예상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의 부채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현 주거 형태로는 전세 23.0%, 월세 56.8%를 차지한 반면, 자가는 20.2%로 분석되어, 이들에게 주거불안정과 더불어 주거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2)

구 분	변 수		항 목	빈 도	백분율(%)
개인특성(3) : 취업경력 및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	자활사업 참여 이전 취업상태		취업	413	65.5
			비취업	218	34.5
	취업자의 취업상태	고용업종	공공근로사업	258	62.2
			숙박/음식업	41	9.9
			건설업	30	7.2
			서비스업	20	4.8
			제조업	18	4.3
			기타	48	12.6
			고용형태	자영/고용주	21
		정규직		16	3.9
		임시(계약)직		40	9.6
		일용직		338	81.4
		담당직무	단순노무직	335	80.7
			서비스직	17	4.1
			판매직	11	2.7
			기능직	11	2.7
	기타		41	9.8	
	비취업자 이전 취업상태	고용업종	가사(전업주부)	45	21.0
			제조업	37	17.3
			공공근로사업	26	12.1
			숙박/음식업	25	11.7
			건설업	24	11.2
			기타	57	26.6
		고용형태	자영/고용주	23	10.7
			정규직	38	17.8
			임시(계약)직	26	12.1
			일용직	81	37.9
			가사(전업주부)	46	21.5
		담당직무	단순노무직	70	32.7
			가사(전업주부)	45	21.0
			생산조립직	18	8.4
			기능직	14	6.5
기타			67	31.4	
생활보호사업 이용		없음	317	50.2	
		있음	314	49.8	
취로사업 이용		없음	381	60.4	
		있음	250	39.6	
공공근로사업 이용		없음	271	42.9	
		있음	360	57.1	
직업훈련 이용		없음	593	94.0	
		있음	38	6.0	
창업지원 이용		없음	629	99.7	
		있음	2	0.3	
실업급여 이용		없음	618	97.9	
		있음	13	2.1	

<표 4>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 특성

구 분	변 수	항 목	빈 도	백분율(%)	비 고
가족특성(1) : 가구구성	가구규모 (동거가구원 수)	0	65	10.3	Min. 0.0 Max. 8.0 Mean 2.29 S.D. 1.36
		1	118	18.7	
		2	163	25.8	
		3	178	28.2	
		4	77	12.2	
	미취학자녀	없 음	561	88.9	
		있 음	70	11.1	
	취학 자녀 (고교생 이하)	없 음	281	44.6	
		있 음	349	55.4	
	60세이상 노인	없 음	529	83.8	
		있 음	102	16.2	
	요보호 장애인	없 음	558	88.4	
		있 음	73	11.6	
	요간병 질환자	없 음	574	91.0	
		있 음	57	9.0	
	여타 취업 가구원	없 음	547	86.7	
있 음		84	13.3		
가족특성(2) : 경제상태	월 평균 가구소득	50만원 이하	213	33.8	Min. 14.0 Max. 260.0 Mean 65.2 S.D. 25.36
		51 - 100만원	374	59.3	
		101- 150만원	37	5.9	
		151만원 이상	7	1.2	
	월 평균 가구지출	50만원 이하	260	41.2	Min. 10.0 Max. 400.0 Mean 67.9 S.D. 35.69
		51 - 100만원	315	49.9	
		101- 150만원	45	7.1	
		151만원 이상	11	1.7	
	가구 총 부채액	없음(0)	218	34.7	Min. 0.0 Max. 30,000 Mean 848.4 S.D. 1951.3
		1000만원이하	289	45.9	
		1001-2000만원	70	11.1	
		2001-3000만원	27	4.3	
		3001만원이상	25	4.0	
	정부지원 소득액	30만원이하	19	3.0	Min. 0.0 Max. 140.0 Mean 56.8 S.D. 15.6
		31-40만원	48	7.6	
		41-50만원	203	32.2	
		51-60만원	159	25.2	
		61-70만원	114	18.1	
	주거 유형	71만원이상	87	13.8	
		자 가	127	20.2	
전 세		145	23.0		
		월세 및 기타	358	56.8	

2) 자활사업 참여 양상 및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 실태

그렇다면, 자활사업자들은 어떤 형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자활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래 <표 5>를 통해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자활사업 참여 양상 및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 실태

구 분	변 수	항 목	빈 도	백분율(%)	비 고
자활사업 참여양상	참여 프로그램 유형(1)	자활근로사업	600	95.1	Min. 1.0 Max. 34.0 Mean 9.25 S.D. 5.45
		자활공동체사업	31	4.9	
	참여 프로그램 유형(2)	봉사형 프로그램	14	2.2	
		공익형 프로그램	475	75.3	
		시장형 프로그램	142	22.5	
	자활사업 참여기간	6개월 이하	236	37.4	
		7 - 12개월 이하	236	37.4	
		13- 18개월 이하	140	22.2	
		19- 24개월 이하	9	1.4	
		25개월 이상	10	1.4	
자활기관의 지원	포상/특전	없 음	557	83.0	
		있 음	74	11.7	
	출퇴근시 차량 (교통비) 지원	없 음	275	43.6	
		있 음	356	56.4	
	기타 지원	없 음	524	83.0	
		있 음	107	17.0	
	불이익 조치	없 음	418	66.2	
		있 음	213	33.8	
	개별상담 경험 (상담경험)	없 음	287	45.5	Mean 1.95 (상담횟수)
		있 음	344	54.5	
	교육훈련(1) :소양교육	없 음	198	31.4	Mean 10.15 (교육횟수)
		있 음	433	68.6	
	교육훈련(2) :자활사업교육	없 음	232	36.8	Mean 5.65 (교육횟수)
		있 음	399	63.2	
	교육훈련(3) :직업교육	없 음	474	75.1	Mean 1.15 (교육횟수)
		있 음	157	24.9	

먼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95.1%가 자활근로사업에 반면 4.9%가 자활공동체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자활근로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직까지도 자활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자활대상자들이 자활근로

사업에 주로 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어떤 특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설문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2.5%는 시장형 프로그램, 75.3%는 공익형 프로그램, 2.2%는 봉사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자활사업 참여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22.5%가 6개월 이하, 37.4%가 7-12개월, 22.2%가 13-18개월로 응답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간은 1-2년 정도에 불과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참여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은 자활사업 도입기간이 짧고, 근래에 설립된 자활후견기관이 많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포상 혹은 특전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응답은 전체의 11.7%, 출퇴근 차량지원 혹은 교통비 지원에 대한 응답은 56.4%, 기타 부수적 지원은 17.0%에 불과하여, 자활활동 및 자립노력을 고양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이 매우 미약한 상황임을 짐작케 하여 준다.

또한, '소극적 혹은 형식적 자활활동에 대한 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다'라는 응답도 66.2%에 이르러, 긍정적 보상 뿐 아니라 자활활동 및 자립노력에의 독려를 위한 불이익 조치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지원 실태를 개별 상담 경험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서, 경험자의 비율은 54.5%, 평균 상담횟수는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자의 고충과 애로, 자립태도 조성을 위한 상담활동 또한 그다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소양교육의 경험은 68.6%, 자활사업교육의 경험은 63.2%, 직업교육의 경험은 24.9%로 나타나, 교육훈련은 주로 소양교육 및 자활사업 교육에 주로 국한될 뿐, 전문적인 직업교육은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 및 탈빈곤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관련 지원은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보여준다.

<표 6> 자활후견기관 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담당 직무		기관지원조치		개별상담		교육훈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12	1.9	13	2.2	1	0.3	7	1.1
불만족한 편	33	5.2	64	10.6	11	3.2	29	4.7
보 통	204	32.3	271	45.1	104	30.2	219	35.3
만족하는 편	302	47.9	218	36.3	171	49.7	289	46.5
매우 만족	80	12.7	35	5.8	57	16.6	77	12.4
합 계	631	100.0	601	100.0	344	100.0	621	100.0
	Mean	3.64	Mean	3.33	Mean	3.79	Mean	3.64
	S.D.	0.84	S.D.	0.83	S.D.	0.76	S.D.	0.80

한편, 미흡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지원 및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아래 <표 6>은 지원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것으로, 대부분

의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40-60%에 이르는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0% 이내로 나타나, 현재의 자활 지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또한, 기관내 관계망 및 기관 풍토에 대한 만족도 역시 아래 <표 7>에서 보여지듯 매우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자활후견기관내 직원들과의 업무적 관계 및 정서적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75%에 이르는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직원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한 반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70%에 이르러,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의 전반적 분위기 및 풍토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 또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기관내 관계망과 기관 풍토에의 만족도

구 분	직원들과의 업무적 관계		직원들과의 정서적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기관 분위기와 풍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불만족	9	1.4	11	1.7	6	1.0	10	1.6
불만족한 편	9	1.4	16	2.6	16	2.5	20	3.2
보 통	123	19.5	132	20.9	104	16.5	138	21.9
만족하는 편	340	53.9	314	49.8	349	55.3	346	54.8
매우 만족	150	23.8	158	25.0	156	24.7	117	18.5
합 계	631	100.0	631	100.0	631	100.0	631	100.0
	Mean	3.97	Mean	3.94	Mean	4.00	Mean	3.86
	S.D.	0.79	S.D.	0.85	S.D.	0.77	S.D.	0.81

이상과 같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는 자활사업 내용의 적합성을 표명하는 것으로, 이는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지원이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주관적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표명되는 이와 같은 양상은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곧, 자활사업 참여자의 50-60%가 이전에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자활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절대적 평가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 등과 비교한 상대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현 자활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및 취로사업의 문제점을 일부분 해소하여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활사업의 취지나 목표에 기준하면 자활사업의 지원체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자활사업의 효과

그렇다면,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효과를 자활사업 참여 이후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 제고에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

여 보았는데, 이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 8> ~ <표 12>과 같다.

<표 8>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의 형성

구 분	일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됨		새로운 일의 시작에 대한 불안감 해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음을 느낌		자활자립에 도움되면 일을 가리지 않고 적극 수행할 것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1	1.7	21	3.3	10	1.6	12	1.9
그렇지 않다	32	5.1	76	12.1	66	10.5	58	9.2
보통	155	24.6	162	25.8	168	26.8	130	20.7
그렇다	309	49.0	292	46.4	285	45.4	306	48.7
매우 그렇다	124	19.7	78	12.4	99	15.8	122	19.4
합 계	631	100.0	629	100.0	628	100.0	631	100.0
	Mean 3.80		Mean 3.52		Mean 3.63		Mean 3.75	
	S.D. 0.87		S.D. 0.97		S.D. 0.92		S.D. 0.94	

<표 9>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의 형성

구 분	대인관계에의 자신감 제고		자기표현 향상		자아존중감 제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 회복		개인적 무력감 해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3	2.1	24	3.8	16	2.5	15	2.4	20	3.2
그렇지 않는 편	35	5.6	93	14.8	60	9.5	64	10.2	72	11.5
보통	195	31.0	223	35.6	175	27.8	208	33.0	201	32.1
그렇다	302	47.9	239	38.1	295	46.8	281	44.6	265	42.3
매우 그렇다	85	13.5	48	7.7	84	13.3	62	9.8	69	11.0
합 계	630	100.0	627	100.0	630	100.0	630	100.0	627	100.0
	Mean 3.65		Mean 3.31		Mean 3.59		Mean 3.49		Mean 3.46	
	S.D. 0.86		S.D. 0.95		S.D. 0.92		S.D. 0.89		S.D. 0.94	

위의 <표 8>은 자활사업 참여 이후의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형성에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로, 여기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이 60~70%에 이르러 자활사업이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형성'에 일련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다음 <표 9>는 자활사업 참여 이후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 형성에 관련된 설문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로, 여기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이 60~70%에 이르러 자활사업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함'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래 <표 10>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태도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로 여기에서는 앞서와는 달리 생활태도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물론, 규칙적 생활태도의 형성에는 긍정적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주 및 흡연 행태에 있어서는 긍정적 변화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축 행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0%를 상회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자활사업 참여 이후에도 소득상태의 변화가 미미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생활태도에서의 긍정적 변화

구 분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됨		음주량이 감소됨		흡연량이 감소됨		저축하는 태도가 형성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다	15	2.4	58	13.7	75	21.1	243	39.4
그렇지 않다	56	8.9	67	15.9	84	23.7	200	32.5
보 통	177	28.1	104	24.6	77	21.7	68	11.0
그렇다	285	45.3	124	29.4	66	18.6	89	14.4
매우 그렇다	96	15.3	69	16.4	53	14.9	16	2.6
합 계	629	100.0	422	100.0	335	100.0	616	100.0
	Mean 3.62		Mean 3.19		Mean 2.83		Mean 3.86	
	S.D. 0.93		S.D. 1.27		S.D. 1.36		S.D. 0.81	

<표 11> 가족 및 친지관계에서의 긍정적 변화

구 분	가족내 불화의 감소		가족 및 친지들의 우호적 태도 변화		가족 및 친지들의 원조 제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51	8.9	44	7.2	138	23.0
그렇지 않다	64	11.2	59	9.7	182	30.3
보 통	203	35.5	213	35.0	167	27.8
그렇다	202	35.3	207	34.0	87	14.5
매우 그렇다	52	9.1	85	14.0	27	4.5
합 계	572	100.0	608	100.0	601	100.0
	Mean 3.24		Mean 3.38		Mean 2.47	
	S.D. 1.06		S.D. 1.07		S.D. 1.13	

한편, 자활사업 참여 이후 가족 및 친지관계에서도 일부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 주목되는데(<표 11>), 자활사업 참여 이후 ‘가족내 불화가 감소되었다’라는, 그리고 ‘가족 및 친지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였다’라는 설문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45%에 이르는 반면 부정적 응답은 20% 내외에 그쳐, 가족 및 친지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 변화가 높은 편임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관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친지의 물질적 원조 양상’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아래 <표 12>는 자활사업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들에 대한 분석결과로 ‘자립의욕 및 자립에의 자신감 제고’에는 긍정적 변화가 높지만 여타 요소들에서는 상반된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자립 요소들의 제고에 있어 자활사업의 성과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12> 자립 관련 요소들의 제고

구 분	자립의욕 및 자립에 대한 자신감 제고		자립에 필요한 관련 기술 능력의 습득 및 제고		자립계획의 수립 및 구체화		자립에 필요한 관련 기반의 조성 (자금/정보/관계망)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매우 그렇지 않다	28	4.5	59	9.4	46	7.3	102	16.3
그렇지 않다	72	11.5	138	22.0	147	23.5	203	32.5
보 통	205	32.8	202	32.3	218	34.8	187	29.9
그렇다	253	40.5	186	29.7	190	30.4	115	18.4
매우 그렇다	67	10.7	41	6.5	25	4.0	18	2.9
합 계	625	100.0	626	100.0	626	100.0	625	100.0
	Mean 3.41		Mean 3.02		Mean 3.00		Mean 2.59	
	S.D. 0.98		S.D. 1.08		S.D. 1.00		S.D. 1.05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에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자활자립의 실현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자립요소의 제고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라 평가된다.

<표 13>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전망과 자립계획

변 수	항 목	빈 도	백분율(%)	비 고
자립전망	자립가능성이 거의 없다	198	31.4	Mean 2.17 S.D. 1.02
	낮은 편이다.	207	32.8	
	그저 그렇다	156	24.7	
	자립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61	9.7	
	매우 높다	9	1.4	
예상되는 자립에의 소요기간	1 - 2년	61	12.8	Min. 1.0 Max. 30.0 Mean 6.84 S.D. 4.97
	3 - 4년	105	22.0	
	5 - 6년	123	25.8	
	7 - 8년	28	5.9	
	9 - 10년	116	24.3	
	11년 이상	44	9.2	
자립계획의 수립	전혀 생각한 바가 없음	168	26.6	Mean 1.88 S.D. 0.63
	막연하게만 생각	370	58.6	
	구체적인 계획 마련	93	14.7	
자립형태	취 업	152	32.4	
	자영(창업)/공동창업	262	55.9	
	기 타	55	11.7	

한편, 자활사업의 성과가 제한적임은 <표 13>의 참여자들의 자립전망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경제적 자립 전망을 5점 척도로 설문분석한 결과, 긍정적으로 전망한 사람의 비율은 10%정도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65%에 이르러, 현 자활사업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전망을

제고함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적 자립에의 소요되는 기간에 있어서도, 1~2년 안에 경제적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2.8%에 불과한 반면 소요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은 65%에 이르러, 경제적 자립에 대해 불투명한 전망이 압도적임을 보여주어 자활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자립계획의 수립에 대한 분석에서도 구체적으로 자립계획을 마련한 경우는 15%에 불과한 반면 85%는 자립계획이 막연하거나 혹은 아예 생각치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 참여 이후에도 이들의 경제적 자립 전망은 전반적으로 제고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상 분석결과에 의거하면, 현재의 자활사업은 ‘탈빈곤과 자활자립 실현에의 기제’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자활사업의 성과에의 영향 요인

그렇다면, 자활사업의 성과, 즉 자립태도 형성 및 자립요소 제고 효과에는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자활사업 참여자에의 변화 양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참여자의 개인 및 가족특성, 그리고 자활기관에서의 지원 및 기관 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³⁾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으며,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인구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는 성별 및 연령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 3)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 제고 등의 변수가 척도로서 신뢰성을 지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본 결과, 생활태도의 변화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신뢰도가 0.600이상으로 나타나 척도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단지, 생활태도 변수의 경우 ‘저축태도의 형성’이라는 항목을 제외한 채 신뢰성 분석을 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0.6524로 나타나, 분석에서는 ‘규칙적 생활태도의 형성’ “음주량의 감소” “흡연량의 감소”만을 생활태도 변수를 구성하는 항목으로 재설정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된 변수들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 <부표 1>과 같다.

<부표 1> 자활사업 참여 이후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변화

항 목	평 균	최 대	최 소	표준편차	척도로서의 신뢰도
근로활동에의 긍정적 태도 형성	14.7131	20.0	4.0	2.7401	0.7236
자신에의 긍정적 인식과 태도 형성	17.5314	25.0	5.0	3.3158	0.7795
생활태도의 긍정적 변화(1) (규칙적 생활, 음주/흡연 감소, 저축)	11.6388	20.0	4.0	3.1391	0.5710
생활태도의 긍정적 변화(2) (규칙적 생활, 음주/흡연 감소)	9.5208	15.0	3.0	2.7876	0.6524
자활자립 관련 요소들의 제고	12.0290	20.0	4.0	3.0898	0.7434

<표 14>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 제고에 대한 개인 및 가족특성의 영향(회귀분석결과)

구 분		근로활동에 긍정적 인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긍정적 생활 태도의 형성		자립 요소들의 제고	
요인	변수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인구 학적 특성	성별	-0.827**	-0.139**	-0.852*	-0.119*	1.74E02	.005	-0.603#	-0.090#
	연령	2.2E02	.064	5.2E02**	.127**	5.05E03	.026	-3.0E02	-0.078
	종교보유	-4.3E02	-0.007	.216	.029	-1.183	-0.054	7.8E02	.011
	음주량	7.6E02	.046	5.7E02	.028	-8.0E03	-0.009	.114	.060
인적 자본	학력	-9.5E02**	-0.121**	-0.160***	-0.168***	2.53E02	.057	-6.3E02	-0.071
	건강상태	.493***	.176***	.392**	.116**	.228***	.145***	.296*	.094*
	기술자격증	.735**	.114**	.672*	.086*	9.55E02	.026	1.144***	.159***
이전 수급 경험	취업경력	1.88E02	.073	7.2E03	.023	-6.7E03	-0.046	1.83E02	.063
	생활보호경험	5.02E02	.009	.156	.023	4.19E02	.013	-132	-0.021
	취로사업경험	-7.4E02	-0.013	-125	-0.018	.143	.045	-212	-0.033
가구 구성	공공근로경험	.219	.039	-2.6E02	-0.004	-9.2E04	.000	-4.6E02	-0.007
	가구원 수	1.83E02	.009	-102	-0.042	-7.0E02	-0.062	6.11E02	.027
	요보호 자녀	-8.2E02	-0.010	-0.844#	-0.082#	-241	-0.049	-452	-0.047
	취학자녀	.384	.069	.658*	.098*	-239	-0.076	.403	.064
	요간병가구원	.109	.018	.140	.019	-111	-0.033	.202	.029
가구 경제 수준	취업가구원	-591	-0.074	8.42E03	.001	-222	-0.049	-181	-0.020
	현 가구소득	7.9E03	.074	-3.2E03	-0.025	5.05E03	.082	4.43E03	.037
	이전가구소득	-1.6E03	-0.025	2.72E03	.034	-3.0E03#	-0.082#	-1.1E03	-0.015
	가구 부채액	-8.3E05	-0.060	-8.0E05	-0.048	-7.8E05*	-0.100*	-7.0E05	-0.045
	전 세	.108	.017	8.87E02	.011	-325	-0.089	.162	.022
월 세	-5.8E02	-0.010	-130	-0.019	-0.332*	-0.106*	-9.0E02	-0.014	
R2		.081 / .047		.091 / .058		.067 / .033		.063 / .028	
F		2.404***		2.720***		1.946**		1.810**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 변수는 ‘근로활동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또한 ‘자립요소의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별 변수의 영향은 정(+)적으로 가정되는데, 분석결과는 이와는 상반되어 주목된다. 이는 자립태도 변화 및 자립요소 제고의 성과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여 흥미롭다.

한편, 분석결과에서 연령 변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자활사업 참여에 따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가 저연령층보다는 고연령층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서는 또한 학력 및 건강상태, 기술자격증 보유 등 인적자본 변수들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제시되어, 자활사업의 효과에 인적자본 변수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서구 연구결과와는 달리 학력의 영향은 상반되게 나타나, 곧 ‘근로활동 및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근로활동 및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의 효과가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에게서 두드러짐을 시사하여 주목된다.

반면, 건강상태는 학력과는 달리 모든 종속변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가 좋은 참여자들에게서 자활사업의 효과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자활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에 건강상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기술자격증 변수도 ‘자립태도의 형성’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술자격증 취득이 ‘자립태도의 형성’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에도 긍정적임을 의미하여,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의 강화가 요청됨을 함축하여 준다.

반면, 취업경력(총 취업년수)은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로운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 대다수가 자립에 유용한 취업경력을 지니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전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이용이 ‘자립태도의 형성’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이 확인되어 주목되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는 수급자들에게서 의존성(dependency)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음을 시사하여 주는 바라 판단된다.

다음, 참여자의 가족특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원 구성 특히 요보호 가구원의 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형성’ 및 ‘자립요소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아동양육 등 가족성원 보호(care)의 부담이 탈수급 및 고용 등의 자립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없음이 보여주어 주목된다. 한편, 가구의 경제적 측면은 일부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 주목된다. 곧, ‘과거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가구부채액이 많을수록’, ‘월세 거주자일수록’ 긍정적 생활태도 형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효과적인 자활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가족특성을 적극 반영한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효과에 자활기관의 지원 양상이 미치는 영향을 아래 <표 15>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기간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곧 ‘자활사업 참여자의 태도 변화’ 및 ‘자립요소 제고’에 자활사업에의 참여기간이 별다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의 유형(시장형 프로그램)은 자립요소 제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근로활동 및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되는 분석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자활자립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업그레이드형 성격의 ‘시장형 프로그램’보다 ‘공익형 혹은 봉사형 프로그램’이 오히려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현 자활사업 프로그램 구성의 부적합성을 함축하여 줄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 전

반에 재검토의 필요성을 적극 시사하여 준다.

반면, 분석결과에서의 직무만족도의 긍정적 영향은 “자활사업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립태도 형성 및 자립요소 제고가 높음”을 의미하여, 참여자의 적성 및 특성 등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담당 업무의 배치가 적극 요청됨을 시사하여 주는 바이다.

또한, ‘자립태도(근로활동에의 긍정적 인식)의 형성’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수급액수의 정(+)적 영향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은 의존적 태도의 형성 및 근로의욕의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참여자에 대한 급여지원이 역효과를 산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립태도의 변화’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표 15>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 형성에 자활기관 지원이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구 분	근로활동에 긍정적 인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긍정적 생활 태도의 형성		자립요소의 제고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참여기간	-2.5E03	-.005	2.79E02	.045	-1.6E02	-.057	-1.3E02	-.022
프로그램 유형	-.564*	-.086*	-.844**	-.107**	-6.8E02	-.019	-7.3E02	-.010
직무만족도	.559***	.169***	.459**	.115**	.261**	.141**	.379*	.102*
수급액수	1.5E02*	.083*	-3.2E03	-.015	1.39E03	.014	1.74E02*	.088*
보상 인센티브	6.06E02	.007	.303	.030	.172	.037	.450	.047
처벌 인센티브	5.63E02	.010	-.276	-.039	-.146	-.046	7.18E02	.011
인센티브 만족도	.104	.031	1.88E02	.005	.154#	.083#	.220	.058
상당경험(횟수)	2.39E02	.035	1.99E02	.024	-3.7E03	-.009	6.82E02*	.090*
소양교육	.108	.018	3.32E02	.000	7.66E02	.023	.371	.055
자활사업교육	5.54E02	.010	1.01E02	.001	-7.3E02	-.023	2.31E02	.004
직업교육	.425	.068	.231	.030	9.23E03	.003	.646*	.091*
교육훈련 만족도	.180	.052	.308	.073	.143	.074	.696***	.179***
직원과의 관계	.221*	.121**	5.51E02	.025	-1.2E02	-.012	5.02E02	.024
동료와의 관계	.583***	.164***	.722***	.169***	-4.5E02	-.023	.122	.031
기관 풍토	.155	.045	.707***	.171***	.104	.055	.269	.070
R2	.210 / .190		.203 / .182		.066 / .040		.173 / .151	
F	10.095***		9.584***		2.605***		7.880***	

*p < 0.05, **p < 0.01, ***p < 0.001

한편, 서구 연구들에서 인센티브 지원은 자립과정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보상 및 처벌 인센티브 등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는 현 자활사업 체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자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적극 마련되지 못한데서, 또한 기관들간 인센티브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되며, 따라서 앞서의 분석결과가 인센티브 지원의 무용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은 ‘자립태도의 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자립요소의 제고’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담활동이 부수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만이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소양교육 및 자활사업교육 중심의 현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함을 함축하여 준다. 이와 더불어, ‘교육 프로그램에의 만족도’ 변수 또한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내용의 질적 측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기관 특성 또한 ‘자립태도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곧 ‘자활기관 내에서 직원과의 관계 및 동료관계가 원만할수록’, ‘기관 풍토 및 분위기에 만족스러워 할수록’ 자립태도 형성에의 긍정적 변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내 관계망 및 기관 풍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요청됨을 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하여 준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효과를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간 기존 연구들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의 모색은 주로 이론적 논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 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은 극히 미흡하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자의 자립태도 변화 및 자립요소 제고에 미치는 자활사업의 효과 및 이에 대한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자활사업 개선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이의 함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개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는 주로 건강수준이 열악한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고용 및 자립에 적합한 근로능력이 대체로 미흡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적 자립에 유용한 인적자본 요소 및 취업경력 등도 전반적으로 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주변부 노동력으로 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

며,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인적자본 능력의 제고 노력과 함께 자활사업의 수행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둘째, 가족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자에게의 가족구성에 따른 보호(care)부담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계부담을 분담하는 가족원의 보유는 매우 미약하여 생계유지의 경제적 부담이 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전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계비 지원은 40-50만원대에 불과하여 이들 가구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지원수준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정부지원은 의존적 태도를 조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립태도의 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지원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의 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물질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지원, 교육훈련지원 등 제반 측면에서 관련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 참여자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는 공공근로사업 및 취업사업 등 이전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참여자의 만족도만으로 자활지원의 적합성을 평가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자활사업 참여 이후 '자립태도의 형성' 및 '자립요소의 제고' 등에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립태도의 형성에는 긍정적 변화가 큰 반면 자립요소의 제고에는 별다른 긍정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자립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태도 변화'에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을 제고하는 데에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자활사업의 방향 및 내용에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활사업의 효과에는 다양한 개인 및 가족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인특성 요인의 영향에서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자립태도 형성의 효과가 높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자활사업의 효과는 건강상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서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건강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또한,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참여자에게 자활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능력 제고에 초점을 둔 교육훈련이 적극 강화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여섯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담당 직무의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관심과 적성, 특성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직무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여 준다. 한편, 분석결과에서는 직업교육 및 교육훈련에의 만족도 등의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소양교육 및 자활사업교육 등에서 벗어난 보다 개별화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기관내 관계망 및 기관 풍토 등도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어, 자활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여 준다. 반면, 분석결과에서 '시장형 프로그램'보다는 '공익형 프로그램'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나타난 점은 매우 주목할 부분으로, 현 자활사업 프로그램들의 적합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더불어 프로그램 운영 양상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준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자활사업은 '자립태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라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자활사업에 애초 기대하였던 성과들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자활사업 개선에 관한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의 영향이 제도 개선 및 자활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자의 상당수가 자활활동에 기본이 되는 근로능력 조차 결여된 채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상은 적극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곧 참여자 선정과정에서의 개선이 적극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 자활사업 효과에 대한 개인 및 가족특성 요인들의 영향을 감안하면, 참여자 개별 특성을 적극 반영한 자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 역시 적극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자활지원 체계 역시 적극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의 실현이 단순히 자활공동체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등의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현실화 될 수 없음을 감안하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욕과 자립능력을 적극 고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곧,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활동 및 자립노력을 적극 보상하여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 적인 교육훈련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역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이인재·이성수. 2002.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과 전망』, 통권 53호.
- 노대명. 2002.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통권 53호.
- 강남식·신은주·성정현. 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 진재문. 2001. “자활사업의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자활사업의 성격과 제3섹타의 가능성”, 『상황과 복지』, 제9호.
- 류정순. 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200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명숙. 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신건강실태와 재활”,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Besharov, D. J. & P. Germanis. 2000. “Welfare Reform: Four Years later”, *The Public Interest*. No. 140.
- Bird, C. E. & A. M. Fremont. 1991. “Gender, Time Use,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32.
- Bloom, D. & C. Michalopoulos. 2001. *How Welfare and Work Policies Affect Employment and Income: A Synthesis of Research*. 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
- Brauner, S. & P. Loprest. 1999. “Where are They Now? What States’ Studies of People Who Left Welfare Tell Us”, *New Federalism: Issues and Options for States. Series A*. No. A-32. The Urban Institute.
- Brooks, M. G. & J. C. Buckner. 1996. “Work and Welfare: Job Histories, Barriers to Employment, and Predictors of Work among Low-income Single Mothe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66. No. 4.
- Cancian, M. 2001. “Rhetoric and Reality of Work-Based Welfare Reform”, *Social Work*. Vol. 46. No. 4.
- Cancian, M. & D. R. Meyer. 2000. “Work after Welfare: Women’s Work Effort, Occupation, and Economic Well-being”, *Social Work Research*. Vol. 24. No. 2.
- Cancian, M., R. Haveman, D. R. Meyer, and B. Wolfe. 2000. “Before and After TANF: the Economic Well-Being of Women Leaving Welfare”, *Special Report*. No. 77.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 Danziger, S. K., A. Kalil, and N. J. Anderson. 2000a. “Human Capital,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of Welfare Recipients: Co-occurrence and Correl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6. No. 4. 635-654.
- Danziger, S. K. et. al. 2000b. “Barrier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 Recipients”.
- Goodban, N. 1985. “The Psychological Impact of Being on Welfare”, *Social Service Review*. Vol. 59.
- Isaacs, J. B. & M. R. Lyon. 2000. “A Cross-State Examination of Families Leaving Welfare: Findings from the ASPE-Funded Leavers Studies”, Unpublished Manuscript.

- Jarett, R. L. 1996. "Welfare Stigma among low-income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Family Relations*. Vol. 45.
- Kaestner, R. 1999. "Employment Prospects of Welfare Recipients: Another Look at the Data", *Cato Journal*. Vol. 19. No. 1.
- Kalil, A., H. A. Schweingruber, and K. S. Seefeldt. 2001. "Correlates of Employment Among Welfare Recipients: Do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Matter?"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9. No. 5.
- Klawitter, M. M. & Weeks, G. 2000. "Modelling Work First Participation and its Effects on Employment Outcomes in Washington State", Paper prepared for Annual Research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Seattle.
- Kunz, J. & A. Kalil. 1999. "Self-esteem, Self-efficacy, and Welfare Use", *Social Work Research*. Vol. 23. No. 2.
- Lerch, S. & J. Mayfield. 2000. "Evaluating WorkFirst: Analyses of Cost-Effectiveness, Barriers to Employment, and Job Search Services", Washingt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Long, D. A. 2001. "From Support to Self-sufficiency : How Successful are Programs in Advanc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Well-being of Welfare recipient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 24.
- McLoyd, V. & L. Wilson.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naghan, E. G. 1990. "The Impact of Occupational and Economic Pressures on Young Mothers' Self-esteem: Evidence from the NLS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Social Problems. Washington, DC.
- Meyer, D. R. & M. Cancian. 1996. "Life after Welfare", *Public Welfare*. Vol. 54.
- Meyer, D. R. & M. Cancian. 1998. "Economic Well-being of Women following an Exit from AFDC",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0.
- Meyer, J. A. 1999. "Assesing Welfare Reform: Work Pays", *The Public Interest*. No. 136.
- Nichols-Casebolt. A. 1986.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Income Testing Income-support Benefits", *Social Service Review*. Vol. 60.
- Ong, P. 1996. "Work and Automobile Ownership among Welfare Recipients", *Social Work Research*. Vol. 20.
- Parker, L. 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amily Relations*. Vol. 43.
- Pavetti, L. & G. Acs. 1996. "Moving up, Moving out, or Going nowhere? A Study of the Employment Patterns of Young Women and the Implications for Welfare Mothers", Urban Institute.
- Pavetti, L., et. al. 1997. "Welfare-to-work Options for Families facing Personal and Family Challenges: Rationale and Program Strategies", Urban Institute.
- Rebecca Y, Kim. 2000. "Factors associated with Employment Status of Parents receiving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Social Work Research*. Vol. 24. No. 4.

- Siegel, G. & A. Loman. 1991. "Child Care and AFDC Recipients in Illinois", Illinois Department of Public Aid.
- Taylor, L. C. 2001. "Work Attitudes, Employment Barriers, and Mental Health Symptoms in a Sample of Rural Welfare Recipi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9. No.3.
- Waldfogel, J., P. Villeneuve, I. Garfinkel. 1997. "The Impact of Welfare Reform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of School of Social Works.
- Wolfe, B. L. & S. Hill. 1995. "The Effect of Health on the Work Effort of Single Mother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0.
- Zedlewski, S. 1999. "Work-Related Activiti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Welfare Recipients", Urban Institute.
- Zedlewski, S., et. al. 1996. "Potential Effects of Congressional Welfare Reform Legislation on Family Incomes", Urban Institute
- Zuckerman, D. M. & A. Kalil. 2000. "Introduction: Welfare Reform: Preliminary Research and Unanswered Ques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56. No. 4.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ntipoverty Policy in Local Community : Focusing on the Self-Support System In Korea

Lee, Sang-Rok

(Assistant Professor of Social Welfare, Kunsan University)

Jin, Jae-Moon

(Full-time Lecturer of Social Welfare, Kyungnam University)

The Self-Support Program was introduced as an antipoverty policy at 2002 year in Korea. But, the Self-Support Program's negative or positive effects have been debated from diverse perspectives to the present. Thu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using the survey data from program participants. Even though the effects of Workfare Programs can be evaluated by various indicators(ex. income, employment status, poverty status, etc.), in our analysis the effec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are evaluated by participants' self-reliant attitudes and behavio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some kinds of self-reliant attitudes(ex. work commitment, self-esteem, etc.) were build up through participation on the Self-Support program, but some kinds of self-reliant factors(job competence and skill, self-sufficiency prospect, etc.) which are more relevant to the self-sufficiency were not build up thorough it.

Second, we found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rogram among people who are females, olders, less educated, more healthy, and the participants who have acquired mor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s.

Third, we also found that self-support center's job training program, adequate task matching, agency climates and intra-networks influence on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elf-Support Progra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elf-Support Program has not been successful up to now and it's reformations are required. It means that objectives of the Self-Support Program as an anti-poverty policy must be obvious and program contents must be diverse. And also program administration systems need to be reformed in o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Support Program.

Key words: Self-Support Program, workfare program, self-sufficiency, anti-poverty policy, self-reliant attitudes.

[접수일 2002.11.22 게재확정일 2002.12.20]